

<조합가입 및 출자금납입 법조항>

[선주상호보험조합법] 제22조(조합 성립 후의 가입)

- ① 조합 성립 후에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가입신청서에 조합원의 자격, 출자 좌수, 보험의 목적인 선박 및 보험금액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가입신청서는 이사가 작성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1. 설립인가 연월일
 2. 제11조 각 호의 사항
 3. 임원의 성명 및 주소
 4. 사업기금과 보험료의 납입 방법, 기한 및 장소
- ③ 제1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출자금 전액을 납입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4조나 제25조에 따라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지분을 양수 또는 승계하거나 보험계약에 근거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정 관] 제9조(조합에의 가입 및 보험계약의 성립 등)

- ① 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에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에 관한 사항, 출자 좌수, 보험의 목적물인 선박(선박법 및 기타 법률이 규정하는 선박으로서 조합이 인정하는 것, 이하「가입선박」이라 한다.), 보험금액 및 기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신청하고 조합의 승인을 얻어 그 인수한 출자금의 전액을 납입하거나, 또는 조합의 승인을 얻어 조합원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를 받고,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종료한 때에 조합과의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어 그 자는 조합원이 된다.
- ② 가입선박의 양수인은 조합에의 가입 및 가입선박의 보험계약의 승계에 대하여 조합의 승인을 얻어 조합원이 될 수 있다. 이 경우에 양수인은 인수한 출자금 전액을 보험계약의 승계시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. 다만, 조합원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정 관] 제10조(출자)

- ① 출자 1좌의 금액은 100,000원으로 한다.
- ②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기본출자는 1좌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출자 총좌수의 100분의 50을 넘어서 보유할 수가 없다.
- ③ 출자금은 조합 또는 조합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일시에 납입하여야 하며, 금전외의 재산으로 출자하지 못한다.

<출자지분 환급관련 규정>

[상 법] 제662조(소멸시효)

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2년간, 보험료의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.

[선주상호보험조합법] 제30조(지분의 환급)

- ① 탈퇴(제명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한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은 출자금을 한도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난 후 그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. 다만, 지분을 양도한 경우 또는 상속 합병으로 지분이 승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제1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지분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일의 조합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.
- ③ 제2항의 지분을 계산할 때 조합의 재산으로 조합의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에게 그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난 후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.
- ⑤ 탈퇴한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 조합에 채무가 있을 때에는 조합은 그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 환급받을 지분 중에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다.
- ⑥ 탈퇴한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 조합에 아직 변제기(辨濟期)가 되지 아니한 채무가 있는 경우 조합은 그 채무의 변제기까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.

[정 관] 제17조(지분의 환급)

- ① 탈퇴하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탈퇴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 기준의 조합의 재산으로부터 채무액과 기부금 기타 출연금을 공제하여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잔액에 관하여 당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출자 액이 출자총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환급금액은 당해조합원의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.
- ② 전항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조합의 자산이 채무액과 기부금 기타 출연금의 합산액보다 부족할 때에는 조합은 그 부족한 금액에 관하여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 제52조 제2항에 규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분담금으로 하여 그 납입을 청구할 수가 있다.
- ③ 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지분의 환급은 해당 조합원의 보험청구권이 소멸한날 이후에 실시한다. 단, 조합원은 조합과 합의하여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지분의 환급을 받은 날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.
- ④ 탈퇴한 조합원의 탈퇴시 보험년도를 포함한 총누적이재율이 지분환급일에 계산하여 80퍼센트 이상일 경우는 지분의 환급을 유보하여 손실보전금으로 충당한다. 단, 이 누적 이재율은 이사회 결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.